

제주4·3사건 직계부재 희생자에 대한 방계혈족의 기념의례와 인정투쟁*

현 혜 경**·김 석 윤***·허 유 순****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제주4·3사건 직계부재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방계혈족들의 기념의례 계승과 인정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을 분석한 것이다. 기간 이들 방계혈족들은 국가를 향하여 자신들도 제주4·3사건의 공식적인 유족으로 인정해달라는 인정투쟁을 벌여왔는데, 그 기반은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묘 관리와 제사 계승이었다. 후손의 정통성을 잇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로 인식되는 만큼 직계후손처럼 자신들도 실질적으로 방계조상에 대한 묘 관리와 제사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유족으로서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들의 요구는 일부 받아들여져 2007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계승하고 있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들이 공식적인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유족으로 인정받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들이 고령으로 사망하면서 다음 세대 방계혈족의 유족 인정 문제는 지속적인 인정투쟁의 한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악셀 호네프(Axel Honneth)의 인정(recognition)이론에 입각하여 제주4·3사건 직계부재 희생자에 대한 방계혈족들의 기념의례 계승을 살펴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인정투쟁 및 인정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념의례를 통하여 공동체 회복과정을 거치면서 3가지 중요한 인정투쟁 면모를 보이고 있다. 하나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비정상적인 죽음을 정상적인 죽음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구성한다. 다른 하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유족들의 권리와 사회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궁극에는 방계혈

* 본 연구는 2018년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의 학술연구사업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교신저자(syaron@hanmail.net)

*** 공공정책연구소 나눔 소장

**** 제주대학교 강사

족들이 공식적인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인정투쟁은 오랜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회적 무시와 수치로부터 벗어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자, 사회적 투쟁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새로운 긍정적 관계를 획득하는 것으로 기념의례의 계승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동체 회복 과정은 호네톨 인정이론에서 말하는 사랑, 권리, 사회적 가치 부여 및 연대 등의 인정효과를 함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심어 : 제주4·3사건, 직계부재, 방계혈족, 기념의례, 인정투쟁

I. 서론

1. 문제인식

올해로 제주4·3사건이 발발한지 71주년이 되었다. 1989년 40주년을 기점으로 제주4·3사건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기억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한지도 어느덧 30년이 흘렀다.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운동은 태동부터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과 같은 인정투쟁을 운동의 핵심으로 삼았다.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은 살아남은 유족들의 과거청산의 한 방편이자, 근본적으로 자신과 공동체 회복에 대한 지향점이 함축되어 있었다. 특히 제주4·3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이하 합동위령제)와 같은 기념의례는 이러한 희생자 및 공동체 명예회복에 대한 인정투쟁의 상징적 표상이었다.¹

당시 합동위령제는 희생자에 대한 개인적 영역의 기념의례가 사회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유족 및 후세대의 애도 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된 기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희생자들이 인정투쟁(struggle

1 제주4·3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대해서는 현해경(2004; 2005; 2006)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for recognition)에 포함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중 남로당 주요 인물이나 항쟁에 적극적으로 관여된 사람들은 인정투쟁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거나 배제되었다.² 또한 유족이 없거나 무호적자 희생자들과 같이 연고가 없는 무연고 희생자들의 경우 인정투쟁의 범주에 실질적으로 포섭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유족의 존재 여부는 인정투쟁과 기념의례의 관건으로 작용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의 정보공개에 의하면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인원은 희생자 14,233명, 유족 59,427명이다. 이중 무호적자가 192명(남 99명, 여 93명)이며, 유족이 없는 희생자가 3,537명(남 2,512명, 여 1,025명)이 된다. 이들 3,729명은 연고가 없는 무연고 희생자로 추정되며, 전체 희생자의 26%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여성의 구성비는 30.0%를 차지하고 있다.³ 무연고 희생자가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사망 당시 연령대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전체 희생자 중 61.1%가 희생 당시 30세 이하(8,699명)로, 희생을 당한 상당수 여성, 아동, 청년들이 무연고로 이어졌다고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연고인 이유로 이들에 대한 인정투쟁은 전체 제주4·3사건의 인정투쟁 구조에서 하위에 위치한다. 사적 영역에서 인정투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에 공적 영역에서조차 배제의 역사 앞에 놓여 있다.

한편 유족 중에는 직계혈족이 아닌 형제자매 및 조카 5,591명 등이 있다.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들이 공식적인 유족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직계부재 희생자에 대한 묘 관리 및 제사 계승이었

2 이를 두고 이재승(2016)은 국가의 방침을 화해와 상생의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일어난 일로 보았다.

3 이런 사실들은 진상규명과정에서 가부장적인 담론 주도 하에서 쉽게 묻혀버린다. 특별히 여성 희생자 비율이 무연고에서 높은 이유에 대한 연구는 차후 마땅히 시도 되어져야 한다.

4 2017년 8월 31일 기준, 형제자매 5,126명, 조카 등 방계혈족 465명 등이 있다.

다. 조상에 대한 중요 의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묘 관리와 제사계승에 대해 직계혈족을 대신하여 방계혈족이 이행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유족으로 인정될 수 없음에 대한 투쟁의 결과 묘 관리와 제사 계승을 관장하고 있는 방계혈족들 일부를 유족으로 인정하였다.⁵

그러나 인정투쟁을 통해 얻은 공식적인 유족의 위치는 직계부재라는 이유로 늘 불안하게 존재하여 왔다. 형제자매에서 시작된 묘 관리 및 제사 계승이 2세대 조카를 넘어 다음 3~4세대에 이르면서 공식적인 유족의 부재 및 무연고 상태로 이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⁶ 따라서 직계혈족이 존재하는 희생자 유족과 달리 직계부재 희생자의 방계혈족들은 지속적인 인정투쟁의 한 가운데 서 있다. 그리고 여전히 묘 관리와 제사 계승은 인정투쟁의 기반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4·3사건 직계부재 희생자 방계혈족들의 기념의례가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지 파악하여 인정투쟁과의 관계를 살펴 보려고 하였다. 또한 기념의례와 같은 문화적 수행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자신들의 명예를 확인하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는 인정효과를 가져왔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인정투쟁에 대한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악셀 호네트(Axel Honneth)의 인정투쟁 논의로부터 출발한다. 호네트는 사회적 투쟁이 인정에 대한 기대가 상처를 입은 도덕적 경험의 틀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문성훈,

5 혈족에는 방계와 직계가 있다. 직계혈족은 나를 중심으로 수직적인 관계이며, 방계혈족은 나를 중심으로 수평적인 관계이다. 직계혈족에는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인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속한다. 방계혈족은 직계혈족을 뺀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시조에서 나온 친족으로 법률상 8촌까지 말한다.

6 세대를 거칠수록 인구감소, 지세, 제사의 변화 및 소멸 등으로 약화될 전망이다.

2011). 이런 호네프의 인정이론은 1980년대 이래 사회적으로 정체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회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면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호네프는 인정 이론에서 근대사회의 세 가지 인정 영역들로 사랑, 권리, 사회적 가치로 구분하였다(문성훈, 1996; 문성훈·이현재, 2011; 주정립, 2011). 주정립(2011)은 호네프의 인정 모델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권리와 사회적 가치 인정의 두 형태만이 사회적 투쟁의 고려 대상으로 남는다고 보았다.⁷ 그러나 사적 관계의 틀 속에서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 호네프는 사회적 투쟁의 정의를 '무시'에 대한 개인적 경험들이 한 집단의 전형적인 핵심경험으로 해석됨으로서 행동을 이끄는 동기가 되어 인정관계의 확대에 대한 집단적 요구들 속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실제과정으로 보았다(주정립, 2011: 515).

호네프는 사회적 투쟁이 인정의 경험과 관련하여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첫 번째는 상호 인정관계의 확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회적 투쟁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새로운 긍정적 관계를 획득하는 것으로 사회적 수치심으로부터 야기되는 마비상태를 집단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보았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투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연대감이 형성되며, 이를 통하여 일정 정도의 인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문성훈, 1996; 문성훈·이현재, 2011; 주정립, 2011: 515). 두 번째는 이해관계를 사회적 투쟁의 중요 동기로 보았다. 이해관계란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처지에 따른 목적 지향적 근본 지향이다. 이를 통하여 개인들은 최소한 자신의 재생산 과제에 당면해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이다(주정립, 2011: 516-517).⁸

7 주정립(2011: 515)은 사랑이라는 인정형태는 자립과 결합이라는 상호관계를 통해 일정한 긴장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적 관계의 틀 속에 머물러 있으며 공적인 사안으로까지 확장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본 측면도 있다.

8 장성빈(2017)은 이런 호네프의 인정이 두 가지를 간과하였다고 보았다. 하나는 인정

이런 호네트의 틀은 한국의 과거사 청산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김명희(2019: 3-37)는 거창·산청·함양 사건 유족운동의 전개과정을 분석하였는데, 유족과 국가, 유족과 언론, 유족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며 수행하는 상(喪)의례에서 사건의 진실에 대한 국가의 부인(denial)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유족들의 인정(recognition)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분석에서 유족들의 인정 전략은 첫째, 희생자의 묘비 건립과 추모 및 기념사업에 초점을 둔 사회적 인정 투쟁과 둘째, 명예 회복과 배상 입법에 초점을 둔 법적 인정 투쟁으로 구축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이 연구는 거창 유족회와 산청·함양 유족회가 사건의 진실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와 사회적 공감을 확장시키며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과거청산 운동을 이끈 중요한 주체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경험 또한 이런 인정 투쟁의 경로를 반영한다.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경험은 감당할 수 없었던 희생과 연좌제로 인한 사회적 수치심에 대한 마비상태를 집단적으로 극복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였던 인정투쟁의 긴 역사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진상규명운동과 명예회복에 참여하였던 사람들 사이에 ‘유족’이라는 연대감이 형성되었으며, 인정효과를 경험하였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문제가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도 인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은 배·보상 문제와 정명문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개인의 정체성을 사회적으

은 이종적 속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인정은 개인의 자기실현과 긍정적 삶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질서를 유지하는 지배의 도구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무시의 경험은 명료하게 현상하지 않을 수 있다. 호네트가 제안하는 인정투쟁의 도식은 명료한 무시의 경험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만연하는 무시와 차별은 사회의 질서 속에 스스로를 은폐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정질서가 요구하는 순응은 마치 인정인 것처럼 가장되며 이로써 사회구성원들은 인정이 아니라 순응을 요구받게 된다고 보기도 하였다.

로 승인받고 이를 통하여 유족들이 받아온 개인적, 사회적 멸시와 무시들의 상처를 회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환적 의미를 가진다.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인정투쟁에서 핵심적인 수단은 굿, 제사, 추모제, 위령제 등과 같은 기념의례였다. 이들은 제주4·3사건의 희생에 대한 이해와 연좌제로 인한 수치심 및 공동체 와해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희생자에 대한 기념의례를 선택하였으며, 각 유족들의 희생자에 대한 애도 경험은 사회적 투쟁에서 핵심적 수단이 되는데 일조를 하였다. 애도에 대한 공통 경험은 유족들의 사회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명예회복의 핵심적 수단이 되었다.⁹

이재승(2016)은 묘지의 정치에서 명예회복과 인정투쟁을 분석하였는데, 사대부의 명예지향의 아비투스(habitus)와 인정투쟁을 다루었다. 그는 사대부의 명예지향적 아비투스는 사대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대중들에게 전반적으로 스며들어 있으며, 이 명예회복 개념을 토대로 한국의 과거사 청산이 베버(Max Weber)의 신분투쟁이나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문화적 자본과 아비투스, 호네프의 인정투쟁 등으로 해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관련한 현안을 검토하면서 한국의 과거청산과정에서 명예회복과 인정문제를 비판적으로 접근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묘지와 기념의례를 둘러싼 인정과 기억은 정치적으로 치열한 양상을 띤다고 하였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관련한 인정투쟁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져 오면서 복잡한 층위를 형성하였으며 층위의 일부는 직계부재 희생자의 방계혈족들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방계혈족들에게 있어서 기념의례 수행은 공식적인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로 이와 관련하여 기념의례가 가지고 있는 인정투쟁의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연구는 제주4·3사건 직계부재 희생자들에 대한 방계 유족들의 기념의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정투쟁을 호네프의 인정이론

9 이에 대한 연구는 현혜경(2004; 2005; 2006)을 참조할 수 있다.

에 입각하여 어떻게 그 기능을 수행하여 왔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2차 자료 기반의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이다. 자료 수집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 명부(이하 명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여기서 제주4·3사건의 희생자는 4·3특별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유족은 4·3특별법으로 정해진 유족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정관에 따른 유족이 있다.¹⁰ 다만 4·3특별법에서 말하는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는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따라서 방계혈족이 유족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분묘 관리와 제사 수행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결정은 4·3특별법 제3조 제2항 제2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국무총리 소속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와 유족을 심의의결한다.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과정은 4·3특별법 제4조에 의해 4·3중앙위원회에서 수행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0 정관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2018) 자료를 참조하였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별도의 회원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4·3특별법에 따른 유족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정황상 유족이지만 증빙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여 법에 의한 유족이 될 수 없는 경우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소속의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이하 실무위원회)에 일부 업무가 위임되어 있다.

희생자의 유형은 '사망', '후유장애', '수형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희생자 신청절차는 시행령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에 의해 실무위원회에 신고하면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후 4·3특별법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실무위원회의 의견서를 4·3중앙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결정을 요청하게 된다.

유족의 경우, 1순위 유족은 직계비속의 경우에 해당되며, 2순위 유족은 형제자매, 3순위 유족은 4촌 이내에 제사를 지내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4·3특별법상 2순위와 3순위의 유족의 경우 1세대(최초 의례 기준)에 한해서만 유족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조카 등 직계를 벗어난 분묘 관리 주체는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호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녀지만 호적에 의하여 양자로 입적되면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방계혈족들은 지속적인 인정투쟁 과정에 있다.

4·3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는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자의 명부 작성 및 비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명부에는 희생자의 희생경위, 유족들의 제사와 분묘 관리 등에 대한 기록이 존재한다. 현재 명부는 제주4·3지원과에서 기록물로 관리되고 있다. 본 연구자들은 2018년 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의 학술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경유하여 명부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였다. 이후 연구자들 모두는 보안각서를 작성하고 2018년 3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특정 장소와 제한된 시간 동안만 명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1차적으로 448건의 방계혈족 명부를 정리하였으며, 2차적으로 제사를 수행하고 분묘를 관리하고 있는 164개 사례를 선별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명부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은 제주4·3희생자유족

회 등의 도움을 받아 실제 유족에 대한 준표준화면접조사를 통하여 보완하였다. 연구자료 분석은 우선 명부에서 확인 가능한 희생자에 대한 인적 상황과 유족들의 기념의례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토대로 집중면접조사(focused interview)에서 도출된 연구대상자들의 기념의례에 드러나는 인정투쟁구조에 대하여 고찰하였다.¹¹

II. 기념의례의 희생자와 유족 현황

1. 방계혈족의 유족 인정에 대한 역사적 전개과정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유족 신청은 2000년 1월 4·3특별법이 제정된 후 처음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다.¹²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8년 동안 여섯 차례에 이르는 희생자 및 유족 신고가 이루어져 왔는데, 수차례 신청기간이 마련된 것도 유족들의 인정투쟁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여섯 차례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기간 동안 4·3 중앙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2019년 3월 26일 기준 78,741명(희생자 14,363명, 유족 64,378명)이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인정되었다(표 2) 참조).

애초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방계혈족들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 된 것은 아니었다. 다음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도와 2007년

11 명부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 연구진 모두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연구에만 이용하였으며, 복사 및 사진 촬영 일체 없이 필요한 자료는 필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12 4·3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하여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확정, 희생자와 유족 신고 접수 및 결정, 4·3평화공원조성과 4·3평화기념관 건립, 희생자 유족의 의료지원금 지원과 후유장애인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제주4·3평화재단, https://jeju43peace.or.kr/kor/sub01_02_01.do).

도의 특별법에서 유족의 정의는 차이가 있다. 2000년에 제정된 4·3특별법에는 희생자의 범위에 수형인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유족의 범위에 방계혈족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4·3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희생자의 범위에 수형인과 유족의 범위에 방계혈족이 포함되었다. 이는 그간 방계혈족들이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기념의례를 기반으로 그들의 인정투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결과였다. 2014년에는 언어적으로 더 다듬어진 법령이 갖추어졌다.

〈표 1〉 제주4·3특별법 내에서 희생자 및 유족의 정의 변화

년도	희생자 및 유족의 정의 변화(제주 4·3특별법 제2조(정의)의 변화)
2000년	2항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항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2007년	2항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 또는 수형자 로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항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2014년	2항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 또는 수형자 로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항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2014년에는 공식적 유족으로 인정된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실제 2007년 개정된 법의 시행은 4월 25일이었는데, 희생자 및 유족 심의 결정은 3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4·3중앙위원회의 7차 심의에는 방계혈족들이 심사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이후 2011년 8차 심의 결정 사항에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9차 심의 결정에서 유족으로 선정된 수가 폭증하게 되었다(〈표 2〉 참조). 다만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해당되지 않아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유족들은 여전히 인정투쟁의 하위구조에 편재되어 있다. 또한 비록 4촌 이내 방계혈족 유족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세대로 이어지면서는 다시 인정투쟁의 하위구조에 편재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표 2〉 4·3중앙위원회 심의 및 결정 현황¹³

(단위: 명)

실무위 접수	중앙위원의	희생자					유족
		계	사망자	행방불명	후유장애	수형자	
1차 ~ 3차	1차(02.11.20)	1,712	1,470	242	-	-	3,674
	2차(03.03.21)	1,061	916	145	-	-	2,659
	3차(03.10.15)	2,266	1,930	223	113	-	4,925
	4차(04.03.09)	1,245	1,245	-	-	-	2,633
	5차(05.03.17)	3,536	2,494	1,009	33	-	8,254
	6차(06.03.29)	2,858	1,682	1,176	-	-	5,517
	7차(07.03.14)	865	240	625	-	-	1,565
4차	8차(11.01.26)	466	153	89	10	214	2,016
5차	9차(14.05.23)	198	99	61	7	31	27,973
	10차(17.07.25)	25	16	5	1	3	210
	11차(18.03.26)	1	-	1	-	-	1
6차	12차(19.03.26)	130	87	24	-	19	4,951
	소 계	14,363	10,332	3,600	164	267	64,378

13 이 표는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12차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결정은 2018년 1월부터 12월 31일 1년간 접수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건 8,887명을 2019년 3월 26일 4·3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희생자 130명, 유족 4,951명 등 총 5,081명을 최종 결정하면서 이루어졌다.¹⁴ 희생자로 결정된 130명은 사망자 87명, 행방불명자 24명, 수형자 19명이며, 수형자 중 4명은 생존희생자로 확인되었다.¹⁵

이렇게 희생자와 유족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공식 위패 설치 및 유족들에 대한 의료비 일부와 생계비 지원 등의 복지혜택을 누리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련의 인정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반면 여전히 인정투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희생자 및 유족들도 존재한다. <표 3>과 같이 심의과정에서 불인정 및 지정 취소, 또는 철회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 불인정되거나 취소된 희생자 수가 104명, 유족이 383명에 이른다. 또한 철회한 사람들의 경우 희생자 1,172명, 유족 1,431명에 이른다. 이들의 인정투쟁은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14 4·3실무위원회에서는 8차례(2018년 7월2일, 8월2일, 9월19일, 10월31일, 11월30일, 12월27일, 2019년 1월25일, 2월28일) 심사를 거쳐 2018년 접수된 2만1,392명 중 8,887명(희생자 240명, 유족 8,647명)을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 및 결정을 요청하였다.

15 생존희생자 2명(박○○, 임○○)은 2019년 1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4·3수형희생자 불법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에 참여한 희생자이며, 다른 2명(송○○, 김○○)은 일반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 후 제주와 일본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됨에 따라 희생자에 대한 위패 설치 및 고통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 03. 26).

〈표 3〉 4·3중앙위원회 심의 결정 불인정 및 취소¹⁶

(단위 : 명)

구분	실무위 접수	중앙위원의	희생자					유족
			계	사망자	행방 불명	후유 장애	수형자	
불인정	1차 ~ 3차	3차(03.10.15)	4	-	-	4	-	-
		5차(05.03.17)	25	-	-	25	-	-
		7차(07.03.14)	2	1	1	-	-	2
	4차	8차(11.01.26)	18	1	1	15	1	12
	5차	9차(14.05.23)	29	2	1	26		357
	소계		78	4	3	70	1	371
취소	4차	8차(11.01.26)	1	-	1	-	-	2
		9차(14.05.23)	1	-	1	-	-	1
	5차	10차(17.07.25)	24	17	7	-	-	9
		소계		26	16	10	-	-
철회	소계		1,172	641	463	12	56	1,431

2. 방계혈족들의 기념대상 희생자 현황

기념의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164개 사례에서 기념대상 희생자의 현황은 〈표 4〉와 같다. 우선 희생자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920년대 출생 희생자들이 가장 많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청년층의 희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계부재라는 점에서 이들 대다수가 미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제주4·3사건 직계부재 희생자 164명의 경우 1948년에 가장 많이 희생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4·3사건의 집중적 희생 시기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희생자 희생형태는 사망자가 103명으로

16 이 표는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행방불명 61명보다 많았으며, 주소지별 분포는 제주도, 애월읍, 조천읍, 한림읍 순으로 옛 북제주군에 해당하는 주소지 분포가 많았다.

〈표 4〉 제주4·3사건 직계부재 희생자(164명) 조사 결과

구분		인원(명)	구성비(%)	구분		인원(명)	구성비(%)
생년 분포	1890년대	5	3.0	성별	여자	15	9.1
	1900년대	6	3.7		남자	149	90.9
	1910년대	17	10.4	소계		164	100.0
	1920년대	95	57.9	주소지	제주시	53	32.3
	1930년대	36	22.0		애월읍	38	23.2
	1940년대	3	1.8		조천읍	31	18.9
	오기재	2	1.2		한림읍	16	9.8
소계		164	100.0		구좌읍	5	3.0
희생 년도	1948년	76	46.3		남원읍	5	3.0
	1949년	49	29.9		서귀포시	4	2.4
	1950년	25	15.2	안덕면	4	2.4	
	1951년	1	0.6	표선면	3	1.8	
	1952년	2	1.2	대정읍	2	1.2	
	미기재	9	5.5	성산읍	2	1.2	
	오기재	2	1.2	한경면	1	0.6	
소계		164	100.0	소계		164	100.0
희생 형태	사망자	103	62.8				
	행방불명	61	37.2				
소계		164	100.0				

특히 제주4·3사건 직계부재 희생자에 대한 성별은 여자 15명, 남자 14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희생자 수가 적었다기보다는 기념의례에서 여성 사례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직계부재 남성 희생자에 비해 직계부재 여성 희생자가 기념의례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

성이 높음을 추론하여 볼 수 있다.¹⁷ 이는 <표 5>와 같이 무호적자 및 유족 없는 희생자 수에서 여성 희생자 수가 적지 않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 근거이다. 여성의 경우 1,118명으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무호적자 및 유족 없는 희생자 현황

구 분	계	여자		남자	
		인원(명)	구성비(%)	인원(명)	구성비(%)
무호적자 현황	192명	93명	8.3	99명	3.8
유족 없는 희생자 현황	3,537명	1,025명	91.7	2,512명	96.2
합 계	3,729명	1,118명	100.0	2,611명	100.0

3. 방계혈족들의 기념의례 수행 현황

제주4·3사건 직계부재 희생자 164명에 대한 기념의례 계승 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희생자의 조카 계승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희생자의 조카손, 희생자의 사촌형제, 희생자의 형제, 희생자의 외조카, 희생자의 외사촌형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4·3특별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일부는 공식적인 유족으로 선정되지 못한 채 인정 투쟁 중에 있다. 이는 현재 2세대에서 3~4세대 방계혈족으로 기념의례가 계승되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기념의례를 수행하고 있는 방계혈족들의 연령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주4·3사건 직계부재 희생자 164명의 기념의례를 계승하고 있는 유족들의 연령은 2018년 기준으로 80대가 23명, 70대가 47명, 60대가 35명, 50대가 38명, 40대가 12명, 30대가 3명, 20대가 3명 등으로 대개 50~70대의 조카들이 맡고 있다. 특히 제주4·3사건을 경험

17 4·3특별법에 따르면 직계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사나 분묘 관리가 입증되어야 유족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 않았던 1960년대 이후 출생 세대들에게도 기념의례가 계승되고 있다. 이는 향후 제주4·3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이 오롯이 문화적 기억에 기대는 문화적 체제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표 6〉 제주4·3사건 직계부재 희생자(164명) 기념의례 계승 유족 조사 결과

구분		인원 (명)	구성비 (%)	구분		인원 (명)	구성비 (%)
성별	남성	152	92.7	월별 제사 분포	1월	12	7.3
	여성	11	6.7		2월	4	2.4
	미기재	1	0.6		3월	12	7.3
소계		164	100.0		4월	3	1.8
출생 년도	1930년대	23	14.0		5월	2	1.2
	1940년대	47	28.7		6월	2	1.2
	1950년대	35	21.3		7월	2	1.2
	1960년대	38	23.2		8월	6	3.7
	1970년대	12	7.3		9월	16	9.8
	1980년대	3	1.8		10월	10	6.1
	1990년대	3	1.8		11월	27	16.5
	2000년대	1	0.6		12월	27	16.5
	오기재	2	1.2		제사는 지냄	19	11.6
소계		164	100.0	미기재	22	13.4	
제사 계승	희생자의 형제	2	1.2	소계		164	100.0
	희생자의 사촌형제	12	7.3	제사 일자	사망일	125	76.2
	희생자의 외사촌형제	1	0.6		생일날	14	8.5
	희생자의 조카	128	78.0		집 나간 날	1	0.6
	희생자의 조카손	19	11.6		행방불명 즈음	1	0.6
	희생자의 외조카	2	1.2		곳을 통해 받은 날	1	0.6
소계	164	100.0	미기재		22	13.4	
묘지 상황	묘 있음	101	61.6	소계		164	100.0
	묘 없음	10	6.1				
	비석만 있음	3	1.8				
	시신 미수습	3	1.8				
	미기재	47	28.7				
소계		164	100.0				

더불어 제주4·3사건 직계부재 희생자 중 기념의례를 여성이 계승하는 경우도 11명이나 되고 있다. 이 경우 무연고로 변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성 계승의 경우는 기혼 여성이라면 처가의 제사를 계승하는 경우가 되며, 후세대 미혼 여성에게는 모계의 제사를 모시게 되는 경우들로 볼 수 있다.

한편 제주4·3사건 직계부재 희생자 164명에 대한 기념의례 수행 날짜를 살펴보니, 가을과 겨울 사이가 많았다. 1948년 겨울에 이루어진 집중적인 희생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념의례 일을 정하는 것은 제사의례 수행 일을 정하는 것으로 희생이 행방불명인의 경우 생일날에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었으며, 혹은 집 나간 날 및 행방불명 즈음을 제사일로 삼는 경우들이 있었다. 간혹 곳을 통하여 무당으로부터 제사 날짜를 건네받는 경우도 있었다. 기념의례의 형태는 집에서 유교식 제사를 통하여 모시는 경우들이 가장 많았으며, 사찰에서 모시면서 불교의례를 행하는 경우도 파악되었다.

묘지 문제와 관련하여 묘를 관리하고 있다고 한 유족들은 101명, 묘가 없다고 응답한 10명, 비석만 세워두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3명, 시신을 미 수습하여 실질적으로 묘가 없는 경우 3명, 미기재 47명이었다. 묘가 있는 경우도 가묘, 가족묘지, 공동묘지 등의 형태로 나뉘고 있다.

Ⅲ. 방계혈족의 기념의례 수행

1. 방계혈족 기념의례 수행 양상

제주4·3사건의 인정투쟁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생존 가족들이 그들 가족들의 희생을 어떻게 형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하

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희생자에 대한 기념의례 수행은 이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 특히 그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훼손당하였는지는 제사와 같은 기념의례 수행에서 보여주는 바가 크다. 제사의 신위수와 참여 유족의 범위는 이들이 얼마나 비극적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를 잘 말해주는 것이다.¹⁸

명부 분석 결과를 보면 명백히 드러나는 하나는 제사의 계승을 통하여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이며, 이를 위하여 부계만이 아닌 처계, 모계가 함께 동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희생의 규모와 유족의 범위를 넘어 공동체의 훼손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제주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¹⁹

본 연구의 사례 분석 결과, 제사의 계승은 공동체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혈족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① 희생자가 남성으로 그 제사를 부계에서 전승하는 경우 ② 희생자가 남성으로 그 제사를 처계/모계에서 전승하는 경우 ③ 희생자가 여성으로 그 제사를 부계(夫/父)에서 전승하는 경우 ④ 희생자가 여성으로 그 제사를 처계/모계에서 전승하는 경우로 분류될 수 있었다. 사례수로 보면 희생자가 남성으로 그 제사를 부계에서 전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희생자가 여성인 경우는 부계, 처계, 모계 상관없이 그 전승 사례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여성 희생자에 대한 그 전승과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남성 전승에 비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

164개의 사례를 통하여 나타난 제사 계승과정을 보면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① 희생자의 직계혈족이 일정기간 동안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다가 직계혈족의 부재로 방계혈족으로 그 제사가 이동하는 경우

18 하나의 사례로 북촌마을의 경우 음력 12월 19일에는 제사를 모시지 않는 집이 없을 정도로 집집마다 제사를 수행하고 있다. 회천마을의 경우도 12촌, 15촌 이내가 모여 제사를 모시는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다.

19 제주에서는 한 마을 공동체 안에 모계, 처계, 부계가 공존하며 상호 부조한다.

② 희생자의 직계혈족의 부재로 아예 방계혈족으로 제사가 이동하는 경우들로 구분된다. 이 두 경우 모두 궁극에는 희생자의 직계부제로 인하여 방계혈족으로 그 제사가 이동되고 있는 것이다.

2. 남성 희생자에 대한 기념의례

희생자가 남성인 경우 그 제사 전승은 부계와 처계·모계 등으로 다시 구분이 되었다. 우선 희생자가 남성으로 그 제사를 부계에서 지내는 경우는 다시 하부에서 네 개의 분류가 가능하였다. 첫째는 남성 희생자에서 남성 직계혈족으로 계승되었다가 다음 세대 남성 방계혈족으로 이어지는 경우, 둘째는 남성 희생자에서 여성 직계혈족으로 계승되었다가 남성 방계혈족으로 이어지는 경우, 셋째는 남성 희생자에서 남성 방계혈족으로 계승되었다가 다음 세대 남성 방계혈족으로 이어지는 경우, 넷째는 남성 희생자에서 여성 방계혈족으로 계승되었다가 다음 세대에서 남성 방계혈족으로 이어지는 경우 등이었다(〈표 7〉 참조). 기혼 여성의 계승은 직계혈족이든 방계혈족이든 부계라는 테두리 안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궁극에는 방계혈족 남성으로 계승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1) 남성 희생자와 부계 제사 계승

첫째, 남성 희생자-남성 직계혈족-남성 방계혈족 계승구조이다. 희생자가 남성으로 그 제사를 부계에서 지내는 경우로 남성 희생자의 제사를 생존한 부친이 그 제사를 지내다 희생자의 형제 혹은 조카로 계승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이 경우 직계혈족의 생존 시 희생자의 제사 계승에 대한 일련의 전수과정이 이루어졌다.

〈첫째 사례〉

① 희생자의 생존한 부친이 제사를 지내다 장남인 희생자 형에게 계

승, 다시 형의 장남 아들에게 계승하였다가 장남 사망으로 차남이 계승한 경우

둘째, 남성 희생자-여성 직계혈족-남성 방계혈족 계승구조이다. 남성 희생자의 제사를 생존한 부계 직계혈족 여성(모친/딸/처 등)이 지내다가 남성 희생자의 형제 혹은 남성 조카로 계승한 경우이다. 이 경우 방계혈족 조카를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²⁰ 때에 따라 남성 희생자의 딸이 방계혈족의 호적에 오르고 남성 방계혈족들이 제사를 계승한 경우들도 발견되었다. 마찬가지로 부인의 이혼과 재가 등으로 희생자의 딸이 희생자 남동생의 호적에 올라 양녀가 됨에 따라 직계혈족 여성이 살아있음에도 방계혈족 남성에게로 이어지는 사례도 볼 수 있다.

〈둘째 사례〉

- ① 희생자의 생존한 모친이 제사를 지내다가 희생자의 조카 손주에게로 계승한 경우
- ② 희생자 및 희생자 남자 형제 사망으로 제사를 그 처가 모시는 경우
- ③ 희생자 및 희생자 남자 형제 사망으로 그 처가 희생자의 제사를 모시다 처의 사망으로 후세대 조카 및 조카손으로 계승한 경우
- ④ 희생자가 사망 후 희생자의 처가 제사를 지내다 희생자의 처가 재가하면서 그 딸이 희생자 남동생 호적에 오르고, 방계혈족 남자 후손이 계승한 경우

셋째, 남성 희생자-남성 방계혈족-남성 방계혈족 계승구조이다. 직계혈족의 부재로 인하여 직계혈족의 제사계승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남

20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 및 도외에 거주하여 제주도내 방계혈족으로 계승되는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희생자의 가족이 거의 사망하여 직계혈족 2명만이 존재하나 트라우마(trauma)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 혹은 이민을 가거나 생사 확인할 길 없어, 방계혈족이 모시는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다.

성 방계혈족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다. 이 경우 희생자를 비롯하여 직계가족의 전멸 및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으로 제사 계승 여력이 없거나 직계가족 딸이 생존해 있음에도 방계혈족들로 제사를 계승하는 경우들이다.²¹ 이 경우 방계혈족들의 제사 계승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하부 사례가 다양하며 중국에는 방계혈족 남성 및 방계혈족 남성 후손들에 의해 세대 계승되면서 무연고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다.

이 경우 2~3세대에서는 양자로 입양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그 이후는 위치가 불안하다. 일례로 희생자의 양자로 입적된 방계혈족이 후손 계승이 어려워지자, 무연고를 대비하여 가족묘지 등을 정리하고 제주지역 공립묘지(양지공원) 등으로 이동한 경우들도 발견되었다. 4세대까지는 집안의례에서 봉사(奉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지제 및 후손 계승이 어려워지거나 그 의미가 점차 희미해짐에 따라 희생자에 대한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생산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들의 고민이다.

〈셋째 사례〉

- ① 희생자의 제사를 형과 동생이 계승한 경우
- ② 희생자의 동생이 지내다가 조카, 조카 손으로 넘어간 경우
- ③ 희생자인 형의 제사를 동생들이 윤제(輪祭)로 지내다가 사망 후 후세대 조카에게 계승한 경우
- ④ 희생자의 4촌 형과 동생이 제사를 지내다 이들이 사망 후 4촌 동생의 아들이(희생자의 5촌 조카)의 제사를 계승한 경우
- ⑤ 희생자 사후 형이나 동생(혹은 문중 어른)이 자기 아들을 희생자의 양자로 입양시키고 제사를 계승한 경우
- ⑥ 희생자의 딸이 존재하지만, 희생자의 남동생이 제사를 모시다가 사

21 직계혈족 딸이 존재함에도 희생자의 남동생이 제사를 모시다 남동생 아들로 제사를 계승한 경우를 통해서도 부계 중심의 연결망이 복원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망 후 남동생 아들이 제사를 계승한 경우

- ⑦ 희생자 및 희생자 처 사망 후 남동생이 모시다 부모까지 돌아가시자 모두 남동생이 계승한 경우
- ⑧ 희생자의 생존한 방계혈족 동생이 모시다 장남이 아닌 차남 및 3남으로 계승한 경우
- ⑨ 희생자의 제사를 모시던 희생자의 형 및 동생 사망으로 동생 아들인 희생자의 조카 및 조카 손이 희생자의 제사를 계승한 경우
- ⑩ 희생자 사후 후 방계혈족 및 그 후세대가 희생자와 사촌녀의 제사를 모시는 경우
- ⑪ 1940년대 생으로, 실제로는 희생자의 친자였으나 호적상 희생자의 형제 양자로 입양되어 조카로서 제사를 계승하다가 후세대 조카손에게 제사를 계승한 경우
- ⑫ 희생자의 친자가 희생자의 형이나 동생의 양자로 입적하여 조카로서 제사를 계승한 경우
- ⑬ 희생자의 양자로 입적되어 제사를 지내다 자손 부재로 인하여 모든 묘를 정리하고 양지공원으로 이동한 경우 등
- ⑭ 희생자가 미혼상태로 행방불명되어 태어난 딸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못하여, 생존한 딸이 있음에도 남자 조카가 계승한 경우

넷째, 남성 희생자-여성 방계혈족-남성 방계혈족 계승구조이다. 직계혈족을 비롯하여 방계혈족 남성의 부재로 인하여 생존한 형수, 제수, 며느리 등의 방계혈족 여성들에 의해 제사가 계승되다가 방계혈족 남성 유족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다. 이 경우 방계혈족 여성들이 대개 기혼으로 부계 방계혈족으로 계승되는 경우들이다. 앞서 여성 직계혈족들과 이들 여성 방계혈족들은 제주(祭主)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남성혈족들의 부재를 담보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⑤의 사례처럼 기혼 누이가 처계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아버지의 부계 방계혈족으로 전환되어 오는 경우들도 존재하였다.

〈넷째 사례〉

- ① 희생자의 형수 등이 제사를 모시다가 자손이 없어서, 방계혈족으로 이동한 경우
- ② 희생자의 조카며느리(1960년대 생)가 희생자의 제사를 모시다 희생자의 조카손인 아들에게 제사를 이행한 경우
- ③ 희생자의 형수, 제수 등이 제사를 지내다가 아들이 18세(성인) 되거나 결혼하여 제사 계승한 경우
- ④ 희생자의 제사를 조카며느리가 봉행하다 아들에게 계승한 경우
- ⑤ 희생자의 누나가 생존 지 계승하다가 누나 사망 후 희생자의 방계혈족으로 계승

위 네 부류의 사례들은 남성 희생자에 대한 부계 계승의 다양한 층위를 보여주었다. 위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것은 살아남은 부계 공동체가 작동하여 끊어진 부계 공동체의 연결망을 잇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남성 부재 상황 시 부계 공동체 테두리 안에 있는 모친, 처, 형수, 제수, 며느리, 누이와 같은 여성들이 방계혈족 남성 후손들이 계승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²²

2) 남성 희생자와 처계·모계 제사 계승

이 경우 희생자가 남성인데, 부계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후세대 여성 혈족으로 이어지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계 및 방계 남성 혈족들의 부재로 직계 및 방계 혈족 여성들이 제사를 계승하여 처계/모계 후세대로 계승되는 것으로 후세대에 이르면 처계의 제사가 모계의 제사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되고 있다. 여기에서도 두 부류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직계혈족 여성이 계승하여 후세대 직계혈

22 이 경우 직계부재 희생자들의 재산문제 등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계승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

족 여성에게로 계승한 경우로 후세대 여성 혈족의 입장에서는 처계의 제사를 계승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다음 세대에서는 모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방계혈족 여성(여형제 등)이 제사를 계승하였다가 자신의 후세대 남성(아들 등)에게 계승한 것으로 후세대 남성 입장에서는 모계의 제사를 계승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첫째, 남성 희생자-여성 직계혈족 여성/남성 직계혈족 계승구조이다. 이는 남성 희생자의 생존한 직계혈족 남성의 부재로 인하여 딸로 계승된 경우로 그 딸이 결혼을 하고 제사를 지낼 경우는 처계로, 딸의 자식들로 다시 넘어갈 경우는 모계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딸의 결혼여부가 제사 계승에서 전환점에 놓인다. 반면 희생자의 제사 계승이 부계, 처계를 거쳐 모계로 이어지지 않고, 바로 모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희생자인 외조부의 제사를 외손자들이 모시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경우 결혼 여부에 따라 제사계승이 처계에서 모계로의 전환 과정을 겪지만, 남성의 경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계로 바로 계승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첫째 사례〉

- ① 희생자의 처 등이 제사를 지내다가 딸로 계승한 경우로, 호적상 조카지만 실제 딸이 수행 후 그 후손으로 이어진 경우
- ② 희생자의 형수, 제수 등이 제사를 지내다가 아들이 없어 희생자의 딸로 계승한 후 그 후손으로 이어진 경우
- ③ 희생자의 처가 제사를 모시다가 조카로 입적된 실제 딸이 제사를 계승한 경우

둘째, 남성 희생자-여성 방계혈족 여성/남성 방계혈족 계승구조이다. 이는 생존한 방계혈족 여성 가운데 여형제들이 제사를 계승하다가 자신이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이 제사를 계승하는 것으로 후세대

남성 입장에서는 외삼촌에 대한 제사와 같이 모계혈족에 대한 제사를 계승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사례〉

- ① 희생자의 여형제(누나, 여동생)가 제사를 지내다 사망 후 여형제(누나, 여동생)의 아들인 외조카에게 계승되는 경우
- ② 희생자의 여동생이 제사를 계승하다 여동생 아들에게로 계승되었다가 외재종손으로 계승한 경우
- ③ 희생자인 외삼촌의 제사를 외조카가 모시고 있는 경우 등

위 두 부류의 사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부계로 계승되는 제사의례에 비해 그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처계, 모계가 함께 유교 제사의례에 동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사람들의 공동체 회복에 대한 열망이 매우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남성 희생자에 대한 남성 방계혈족 중심의 기념의례 계승에서 드물게 여성 직계혈족으로 계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기념의례 계승에서 여성 역할을 주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한 면이다.

3. 여성 희생자에 대한 기념의례

1) 여성 희생자와 부(夫·父)계 제사 계승

희생자가 여성인 경우는 결혼 여부가 이들에 대한 기념에서 중요한 위치를 결정한다. 기혼 희생자인 경우 기념은 부계(夫) 계승이 대다수이지만, 남편의 집안이 전멸일 때는 희생자의 처계에서 제사를 계승하고 있는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다.

미혼인 여성 희생자의 경우 제사 계승은 부계(父)에 의한 것이지만, 부(父)계가 전멸할 경우 모계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희생자가 여성인 경우 남편 쪽으로 제사가 계승이 되고 있

는지 부친이나 남성 형제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는지 크게 둘로 분류되어진다.

첫째, 여성 희생자-남성(夫) 방계혈족-남성(夫) 방계혈족 계승구조이다. 이는 희생자가 여성으로 그 제사를 부계(夫계)에서 생존한 방계혈족 후세대가 계승하는 경우로 결혼관계 여부가 핵심이다. 만일 혼인 신고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혼이나 사실혼 관계라면 남편 쪽 방계혈족들이 제사를 계승하고 있다. 이 경우 남성 희생자-남성 방계혈족-남성 방계혈족 계승구조와 연동되고 있다.

〈첫째 사례〉

- ① 희생자가 사실혼 관계 속에서 사망, 사실혼 관계의 남편 동생이 제사를 모시다 그 자식에게로 계승한 경우 등

둘째, 여성 희생자-남성(父) 직계/방계혈족-남성(父) 방계혈족 계승 구조이다. 희생자가 여성으로 그 제사를 부친이나 남자 형제들에 의해 지내는 경우로 부모 혹은 남성 형제가 누이에 대한 제사를 지내다가 희생자의 조카로 계승되는 경우이다. 즉 조카가 고모의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부계 방계혈족에 대한 제사가 된다. 이 경우 대다수 여성 희생자는 미혼이다.

〈둘째 사례〉

- ① 희생자가 부친의 여동생으로 고모의 제사를 부친이 지내다가 그 아들인 남자 조카가 모시는 경우
- ② 희생자가 부친의 누나로 부친이 제사를 지내다 고모의 제사를 남자 조카가 모시는 경우

2) 여성 희생자와 처계·모계 제사 계승

희생자가 여성으로 그 제사계승이 여성형제로 이어지는 경우에서

나타나고 있다.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제사계승에서 처계 및 모계가 동원된다는 점에서 기존 제사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집안의 남성 가족들의 전멸로 살아남은 여성 형제가 제사를 지내다가 여성 형제의 자식에게 계승되는 경우로 1세대 여성형제 입장에서 보면 처계의 제사를 수행하는 것이지만, 2세대 이르면 외조카 입장에서는 모계혈족에 대한 제사가 된다, 즉 이모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사례〉

- ① 희생자가 모친의 여동생으로 이모의 제사를 여자 조카(모친의 딸)가 모시는 경우 등

4. 기념의례와 공동체 회복

방계혈족의 제사 계승은 명백히 공동체 회복 및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치적 투쟁을 지향하고 있다. 이들의 제사 계승은 끊어진 혈통을 보존하고 지역 내 존재하는 가족공동체 및 혈연공동체를 복원해 가는 수행과정을 보인다. 특히 제주의 경우 집성촌이 많은 관계로 혈연공동체의 복원은 곧 지역 공동체의 복원으로 이어졌다. 이는 조나영(2018)의 주장처럼 주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상호 인정 모색의 한 방편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제주4·3사건 이후 이루어지는 희생자에 대한 기념의례는 탄압받아온 사람들의 자기정체성 형성 및 명예회복과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는 인정투쟁의 요소를 함유하고 있다. 다만 남성 희생자에 대한 방계혈족의 제사 계승과 공동체의 복원은 명백하고 체계적인데 비해 여성 희생자에 대한 방계혈족의 제사 계승은 그러하지 못하다(〈표 7〉 참조).

〈표 7〉 제주4·3사건 직계부재 희생자에 대한 제사 계승 체계

희생자 성별	계승 체계	제사 계승 1세대	제사 계승 2세대
남성	부계	남성 직계혈족	남성 방계혈족
		여성 직계혈족	남성 방계혈족
		남성 방계혈족	남성 방계혈족
		여성 방계혈족	남성 방계혈족
	처계→모계 전환	여성 직계혈족	여성 직계혈족
		여성 방계혈족	남성 방계혈족
여성	부(夫/父)계	夫계 남성 방계혈족	夫계 남성 방계혈족
		父계 남성 직/방계혈족	父계 남성 방계혈족
	처계→모계전환	여성 방계혈족	여성 방계혈족

남성 희생자의 경우 비록 남성 직계혈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여성 혹은 방계혈족들에 의해 얼마간 제사 수행의 과도기를 거친 후 궁극에는 남성 방계혈족으로 계승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성 희생자의 경우는 혼인 여부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혼인한 여성인 경우 부(夫)계 남성 방계혈족에 의해 기념의 대상이 되지만, 혼인하지 않은 여성인 경우 점차 기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매우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사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특징은 제주4·3사건 후 가족 혹은 지역공동체 복원이 철저히 부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모계, 처계, 부계의 힘이 상호 공존하던 지역 공동체의 특징이 제주4·3사건 이후로 급속히 부계 중심의 공동체로 전환되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실제 남성 희생자이든 여성 희생자이든 부계에서의 제사 계승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남성 혈족의 부재로 처계 및 모계의 제사를 수행하는 경우는 기념의 문제에서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인정투쟁의 하위 층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기념의례 계승이 가지고 있는 인정 투쟁적 요소는 도덕적 투쟁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다.

IV. 기념의례의 계승과 인정투쟁

1. 비정상적 죽음에서 정상적 죽음으로의 전환

기념의례를 거치면서 공동체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가장 우선하는 것은 방계혈족 기념의례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는 비정상적인 죽음을 정상적인 죽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길성(2010)은 정상적인 죽음과 비정상적 죽음을 구분하였는데, 조상이 될 수 있는 죽음을 정상적 죽음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대조되는 것을 비정상적 죽음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정상적 죽음을 맞는 자는 조상이 되어 유교 제사의 대상이 되지만, 비정상적 죽음을 맞는 자는 '원혼'이 된다고 보았다. 강정원·이도정(2017)은 이러한 원혼은 유교 조상숭배에 포함되지 못하고, 무속신앙을 통하여 다루어진다고 보았다.²³

최길성(2010)은 비정상적 죽음에는 통과의례를 마치지 못하거나 객사한 죽음, 자손의 의례를 받지 못하는 죽음이 속한다고 보았지만, 비정상적인 죽음이라도 일정한 의례를 거치면 의례 주체나 후손들에 의해서 정상적 죽음으로 지위변환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제주4·3사건 직계부재 희생자에 대한 기념의례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 죽음을 정상적 죽음으로 지위변환 시키는 과정이자 희생자에 대한 후손들을 연결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23 제주사람들의 비정상적인 죽음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다카무라 료헤이(2010)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 무시와 멸시, 억압, 연좌제, 금기 등에 대한 후손들의 도덕적 인정투쟁과정이기도 하였다. 이 문제는 자신의 정체성 문제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제주4·3사건에 대한 이해 및 조상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 않을 때의 사회 속에서 자기 삶에 대한 이해 부재와 정체성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이었다. 제주4·3사건 이후 제주지역사회에서 치병곳이 많았다는 것은 생존 가족들과 후손들의 사회적 스트레스 및 정체성 혼란이 얼마나 심각하였는가를 보여 준다.²⁴ 장성빈(2017)은 인정을 통하여 긍정적 자기관계에 도달하지 못한 개인은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상의 비정상적 죽음을 정상적 죽음으로 전환하는 것은 후손들의 자신 삶에 대한 긍정성을 부여하는 중요 과정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제주4·3사건을 경험한 생존 가족들은 희생된 조상과 분리되면서도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조상의 욕구와 필요인양 느끼면서 하나가 되는 정서적 결속 상태를 지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념의례는 정상적 죽음으로의 전환을 이루는 과정이자 희생된 조상과 공동체로부터 배려를 이끌어내고 배려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상호 작용으로서의 사랑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연좌제 및 금기의 압력과 더불어 제주지역의 촌락사회는 부계, 처계, 모계 마을주민들이 함께 생활하고 노동력을 공유하는 문화로 인하여 사회적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직계혈족 못지않게 방계혈족의 힘도 강하여, 촌락사회 내에서 제대로 된 연고를 갖지 못한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의례나 묘 관리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이를 평가하며 사회적 압력을 행사한다.

이것은 사랑의 반대인 사회적 무시 및 압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긍정적 자기의식 및 자신감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죽음을 정상적인 죽음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24 이에 대해서는 현혜경(2004; 2006)을 참조하기 바란다.

희생자와 생존한 가족 간 그리고 생존 가족과 공동체 간의 발생하는 무시와 폭력에 대응하여 배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며, 이 배려는 사랑의 한 차원으로 인정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묘가 없는 비정상적인 죽음도 의례를 통하여 정상적인 죽음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기념공간의 부재는 상대적으로 기념의례에 기대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다.²⁵ 분석한 164명 중 103명은 사망자로 61명은 행방불명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 이 중 묘 관리에 대해 알 수 없는 경우가 63명이 되고 있다. 묘가 없다고 한 경우도 10명, 비석만 있다는 경우도 3명,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였다는 경우도 3명으로 16개 사례는 확실히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묘가 없다는 것이다. 기념공간이 부재함에도 제주4·3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는 기념의례였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죽음으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의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기념공간의 부재를 기념의례를 통하여 그 의미를 발생시켜왔다. 때문에 의례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는 비정상적 죽음이 무탈하게 정상적인 죽음의 세계로 포섭되지 못하였다.

희생자에 대한 의례 수행과 정상적인 죽음으로의 전환은 죽음권과도 관련이 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그 사회에 일정한 기여를 하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 죽음을 공동체가 기억하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의 존재감 및 존엄성과 연관된 문제이다. 따라서 개인의 존엄성은 죽음과 함께 완결된다고 본다(강정원·이도정, 2017). 때문에 제주4·3 사건 직계부재 희생자에 대한 방계혈족의 의례는 희생자에 대한 정상적인 죽음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그 죽음을 공동체가 기억하고 구성원들의 존재가치 및 존엄성을 회복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5 노용석(2010)에 따르면 전쟁이나 학살과 같은 사건에서 죽은 자의 몸의 존재는 국가에 의한 죽음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근대 국민국가의 폭력성과 과오를 드러내는 과거청산의 중요한 기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유해발굴이 어려운 제주4·3사건의 경우는 기념의례에서 나타나는 비극성이 그것을 대신하는 경우들이 많다.

특히 국가폭력 등에 의한 재난, 학살 등으로 비정상적인 죽음에 대하여 깊게 각인하게 된 생존자들은 모든 인간이 출생하면서 누리게 될 죽음권 훼손에 대한 투쟁 속에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긍정적 관계를 획득하고자 한다. 또한 비정상적 죽음에 대한 사회적 수치심과 비난으로부터 마비되었던 상태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호네프의 인정 형태의 첫 번째인 사랑과 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능적 욕구와 정서를 지닌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인정 형태이다. 즉, 이 제사계승을 통한 관계망의 회복은 개인들에게 자신감과 자기 믿음의 자기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제주4·3사건의 '유족'이라는 권리와 명예회복

호네프의 두 번째 인정형태인 권리관계는 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과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받음으로 인해 획득되는데, 권리의 인정은 사회적으로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가진 이성적 존재이자 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사와 같은 기념의례를 통해 망자의 희생에 대한 명예 및 도덕회복과 가족공동체의 관계 회복은 직접적인 정치적 투쟁이 아닐지라도 개인의 정체성을 공동체적으로 승인받고 오랜 세월 모욕 받아온 상처와 긍정적 자기의식 형성 및 사회적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것은 명예회복 과정으로 이어지며 명예회복은 일련의 과거청산운동의 성격이 동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식적 유족으로 선정되는 것은 한국의 근대 국가 설립을 위한 희생으로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권리는 곧 명예의 회복 및 그에 따른 보상체계를 획득하는 과정이다. 특히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직계혈족들이 혈통에 의해 유

족으로 선정된 것과 달리 방계혈족들은 제사수행과 같은 기념의례를 통하여 유족으로서의 지위와 명예를 취득한다는 점에서 기념의례의 정치성과 권리의 관계를 볼 수 있다.

기념의례를 기반으로 한 방계혈족들의 공식 유족으로서의 지위 확보는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자원을 확보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90년대 민주화운동세력에 의하여 시작된 진상규명운동의 자원은 그 동력이 상실되면서 실제로는 유족 중심으로 인적 자원이 구성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족의 규모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중요 인적 자원이자 동력이 되었다. 일정 정도의 유족 수를 유지하는 것은 향후에도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방계혈족들의 인정투쟁은 입양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기념의례의 계승자를 찾고 그들의 유족으로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 인정투쟁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3. 사회적 가치와 연대 확산

제3장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공동체 및 사회적 관계망의 회복에 대한 것이다.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는 과정은 제사 계승을 통하여 손실된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의 위치 재배치와 질서 구성, 나아가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위치와 질서를 재배치시키고 있다.

명부 164개의 사례를 통하여 드러나는 몇 가지 중요한 해석의 지점들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지점은 살아남은 자들이 희생자에 대한 기념과 기념의례를 통하여 해체된 혈족들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계보를 연결시킴으로서 가족공동체의 네트워크 복원을 끊임없이 이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신을 수습하고 묘를 관리하는 일은 조상과 자신의 연결고리로 생각하기에 기념의례와 더불어 묘를 관리하는 것은 비정상적 죽음을 정상적 죽음으로 전환시키는 죽음권과 그에 기반하여 사

회적 비난을 극복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공동체를 연결하는 인정투쟁이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가 부여되며 집단적으로 인정된 자부심과 명예감이 동반된다. 박해광(2016)에 따르면 이런 사회적 가치부여는 개인의 특성을 존중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로 발전할 수 있게 해주며, 실제 제사를 수행하고 있는 방계혈족들의 끊임없이 이루어진 유족인정 요구와 그들의 연대는 4·3특별법에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사무엘 쉐플러(Samuel Scheffler) 2013년 『죽음과 사후 삶』에서 개체의 죽음과 공동체의 삶 간의 연관을 밝히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개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삶과 연대하는 인간다운 삶의 회복에 있다고 하였다(권수현, 2018 : 125-52). 제주4·3사건 직계부재 희생자들의 죽음에서도 이러한 정황들은 드러난다. 개별 희생자들의 죽음을 넘어서 공동체의 삶과 연계되었다고 인식하여 그들 스스로가 연대하는 지점들을 창조하였다.

직계혈족들과 달리 방계혈족들의 인정투쟁의 범위는 매우 넓다. 8촌을 넘어 종종 16촌을 아우르는 혈족들을 결집시키고 있으며, 이들의 연대는 공동체 연대로 확산되는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방계혈족들의 연대는 유교 제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으로 남성 계승과 남성 연대라는 가부장적인 구조를 가졌지만, 실제적인 계승과정에서는 더욱 다층적인 사회적 관계 및 연대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회적 연대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자부심, 자긍심, 긍정적 자의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억압되었던 많은 사회적 가치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권, 해원, 상생, 평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들이 재고되면서 새로운 가치 위에 새로운 권리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가치들을 통하여 도덕적 투쟁이 규범적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V. 결 론

인정은 무시와 경멸에 대한 전략의 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현상적인 무시와 억압은 70여 년 동안 이어져 왔다. 연좌제를 비롯하여 사회문화적 풍습으로 고착화된 다양한 형태의 무시 유형이 존재하여왔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억압과 무시로 생존한 가족과 후손들의 인정투쟁은 기념의례와 같은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장치에 기대어 수행될 수밖에 없었다. 규범적 투쟁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기념의례에 기반 한 인정투쟁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기에 대한 긍정, 권리회복과 사회적 연대를 가능하게 한 도덕적 힘을 통하여 공권력에 가려진 실체를 드러나게 하였으며, 이에 진상규명과 국가수반의 공식 사과가 이루어지면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만 후손에 대한 명예회복의 한 차원은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유족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혈통주의에 입각한 직계혈족만이 공식적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 곧 바로 지역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국가는 방계혈족들의 기념의례를 기반으로 한 인정투쟁 속에서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에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공식적인 유족으로 인정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세대’라는 중요 변수를 만나면서 인정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간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기념의례와 인정투쟁은 사회적 소통의 도덕적 발전을 추동하는 메커니즘(mechanism)으로 작동하여 왔다. 그러나 직계혈족이 부재한 희생자들의 기념의례는 위태롭기만 하다. 현재 3,537명의 제주4·3사건 무연고 희생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묘지와 제사 같은 기념 공간 및 기념의례에 대한 경로 분석이 없다. 기억 및 망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연구는 중요

주제로 부상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세대'라는 변수 또한 향후 제주4·3사건에 대한 이해와 기억이 문화적 장치들에 달려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기념의례를 둘러싼 인정투쟁은 제주4·3진상규명운동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강정원·이도정. 2017. “무연고묘와 죽음권-서울과 화성, 평택, 진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민속학』 4. 7-51쪽.
- 권수현. 2018. “죽음의 형이상학으로부터 공동체적 삶의 연대로: 죽음의 정의와 윤리”. 『사회와 철학』 35. 125-152쪽.
- 김명희. 2019. “거창·산청·함양 사건 유족운동의 전개과정: 유족의 상(喪)의 과정과 감정동학”. 『일감법학』 42. 3-37쪽.
- 노용석. 2010. “죽은 자의 몸과 근대성: 한국의 전사자·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 연구”. 『기억과 전망』겨울호(통권 23호). 234-259쪽.
- 다카무라 료헤이. 2010. “제주도와 일본에 있어서의 비정상적인 죽음에 대한 대응”. 『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37-143쪽.
- 박해광. 2017.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인정투쟁 :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7(4). 103-136쪽.
- 이재승. 2016. “묘지의 정치”. 『통일인문학』 68. 257-296쪽.
- 장성빈. 2017. 『악셀 호네트에서 인정과 순응의 문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14189호)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 『4·3희생자 명부』.
- 제주4·3희생자유족회. 2018. 『2018년도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정기총회 자료집』.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의 정보공개 자료 『희생자 및 유족 심의 결정

- 현황(2017년 8월 31일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의 정보공개 자료 『희생자 및 유족 심의 결정 현황(2018년 10월 31일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2019. 03. 26. “보도자료 : 제주4·3희생자 유족 5,081명 추가 인정”.
- 조나영. 2018. “인정 패러다임 안에서 주체로 투쟁하기 : 호네프(A, Honneth)의 인정 이론과 교육비판”. 『교육철학연구』 40(1). 139-163쪽.
- 주정립. 2011. “호네프의 인정투쟁모델의 비판적 고찰을 통한 저항 이론의 새로운 모색”. 『민주주의와 인권』 11(2). 511-533쪽.
- 최길성. 2010. 『한국인의 조상숭배와 효』. 민속원.
- 현혜경. 2004. “기억투쟁과 4·3위령의례”.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69-96쪽
- _____. 2005. “4·3과 고향의 재현”. 『민주주의와 인권』 5(1). 205-227쪽.
- _____. 2006. “4·3기억의 고향을 통한 재현 : 정치적 사건과 문화적 정치”.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선인. 111-134쪽.
- Honneth Axel(문성훈 역). 1996.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동녘.
- Honneth Axel(문성훈·이현재 역). 2011. 『인정투쟁(악셀 호네프 선집 1)』. 사월의 책.
- 제주4·3평화재단. https://jeju43peace.or.kr/kor/sub01_02_01.do

ABSTRACT

Memorial rituals and recognition struggles by collateral blood relatives of Jeju 4·3 victims in the absent of lineal blood relatives

Hyun, Hyekyung

(Senior staff Researcher, Center for Jeju Studies at the Jeju Research institute)

Kim, Seokyun

(Chief Researcher, Public Policy Institute for Sharing)

Heo, Yousoon

(Lecturer,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at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succession of memorial rituals and fight for recognition for the direct victims of Jeju 4·3 by their collateral blood relatives. To date, those collateral blood relatives have waged a recognition struggle against the government to be recognized themselves as official family members of Jeju 4·3 victims, as they would need to undertake the victim's memorial ceremony each year and to manage the tomb. The most important aspect for the legitimacy of a descendant is undertaking the memorial ceremony, in the absent of any lineal blood relatives.

Some of these requests have been accepted, with the amendment of "the Special Act on discovering the truth of the Jeju 4·3 incident and the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Relatives up to the first cousin of victims who has succeeded the memorial ceremony and managed the tomb are now recognized as official bereaved family members. However, over time, they

have gradually decreased in numbers by natural death. The issue of the degree of kinship for next generations is in the middle of a continuing recognition fight.

Based on Axel Honneth's theory of recogn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succession of memorial rituals by collateral blood relatives and its effect on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and recognition effect. We found three main aspects. First, the memorial ceremony constitutes as a process of converting the abnormal deaths of the victims of Jeju 4·3 into normal death. Second, it is the process of recovering the rights and social honor of the bereaved people through this process and ultimately social solidarity. Finally, undertaking memorial ceremony and managing the tomb served as a functioning device that allows them to be recognized as official bereaved family members.

Such a struggle for recognition is a process of restoring social relations from social ignorance and suppression which have been imposed to them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acquiring a new positive relationships with oneself through social struggle. As Honneth's theory of recognition suggested, the recognition effects of love, rights, and social solidarity are evident in the process of restoration of community through the succession of memorial rituals.

Key Words : Jeju 4·3 incident, the absent of lineal blood relatives, collateral blood relatives, ceremonial rituals, struggle for recognition